90년대 서독의 사회정책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 및 그 결과: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및 이인소득자 모델과 관련 하여*

이 미 화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서독의 90년대 자녀가 있는 여성의 특별한 노동시장 참여형태 및 부정적인 결과, 사회정책, 남성생계부양자 모델과 이인소득자 모델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서독은 불안정한 노동 및 실업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변화하고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 및 가족형태구조의 변화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성별분업 및 가족과 노동참여에 대한 문화적 젠더 가치관도 변화하였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녀출산 후에도 지속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을 원하였다. 이에 대해 서독복지국가는 보육정책 및 양육휴가정책,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연금정책을 통해 여성의 변화된 문화적 가치관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와 그 결과와 의미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90년대 여성의 특별한 노동시장 참여형태와 그로인한 불이익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향하는 사회정책과 여성의 변화된 문화적 가치관간의 모순으로 비롯된다는 이론적 테제 하에 이루어진다.

[주제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보육정책, 양육휴가정책, 노동시장정책, 연금정책,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이인소득자 모델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s Mediated by Social Policies in the 1990s in Western Germany in Relation to the Male Breadwinner and Dual-Earner Models

Lee, Mi-hwa

< Abstract >

This paper focus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women's participation in the western German labor market and German social policies in the 1990s with regard to the male breadwinner and dual-earner models. In that decade, while employment prospects grew precarious and unemployment increased in newly unified Germany, the family form was changing and diversifying. Due to both sets of factors, women increasingly focused on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In addition, women's cultural values with regard to gender divisions were in flux. In particular they sought to reconcile work and family after childbirth.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 welfare state in western Germany properly responded to the changes with social policies with regard to child care, parental leave, pensions, and access to positions. It is assumed that the disadvantages facing women entering the labor market

www.kci.go.kr

result from the internal contradictions of women's perceived cultural value and from social policies that have been influenced by traditional social values with regard to gender and work.

[Key Words]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child care policy, parental leave policy, labor market policy, pension policy, male breadwinner model, dual earner model

* 이미화(Lee,Mi-hwa, E-Mail:bremen5@hanmail.net)
학위취득대학:브레맨 대학교 현직:서강대 시간강사
Received: Jan. 15. 2014 Revised: Jan. 20. 2015 Accepted: Feb. 15. 2015

www.kci.go.kr

Ⅰ. 서 론

70년대 이후 구서독에서는 비정규직 근로 및 실업의 증가 그리고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및 가족 구조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선 7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고 생산력 증대는 정체되었다. 이로 인해 총 노동규모는 수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어 80년대에는 고용자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반면에 실업률은 높지 않아서 줄어든 노동규모에 맞게 노동력이 분배되었다. 그 분배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고용 형태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80년대 중반 이후 정규직 고용은 쇠퇴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1970년 전체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 고용의 비중은 84%에서 1995년에는 68%로 감소되었다. 동시에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다양화 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시간제 근로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대부분이 여성의 의해 수행되었다. 그리고 시간제 근로형태의 일부는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의 보호를 받았지만 저임금의 불안정한 짧은 시간제근로관계(Geringfügige Arbeitsverhältnis)는 이러한 사회적 보호로부터 미미한 지원을 받거나 배제되었다.

이와 더불어 70년대 이후 산업화 사회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변화 과정이 노동시장을 재구조화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변화 국면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였고 이 분야에서 짧은 시간제 근로 형태가 90년대에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창출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여성들이 고용되었다. 반면 제조업 같은 남성적 직업에서의 일자리는 축소되어 이것이 실업의 증가, 특히 남성의 실업증가를 이끌었다.[1)]

따라서 가구의 소득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여성의 소득이 중요해졌다. 특히 저학력의 여성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이 필요했는데, 이는 그들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는 낮은 수준의 학력 및 노동지위 그리고 더 높은 실업위험성에 처했기 때문이다(Engelbrech and Reinberg 1998, 69).

이와 더불어 70년대 이후 산업화 사회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변화 과정이 노동시장을 재구조화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변화 국면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였고 이 분야에서 짧은 시간제 근로 형태가 90년대에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창출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여성들이 고용되었다. 반면 제조업 같은 남성적 직업에서의 일자리는 축소되어 이것이 실업의 증가, 특히 남성의 실업증가를 이끌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여성의 소득이 중요해졌다. 특히 저학력의 여성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이 필요했는데, 이는 그들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는 낮은 수준의 학력 및 노동지위 그리고 더 높은 실업위험성에 처했기 때문이다(Engelbrech and Reinberg 1998.69).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

1) 서독에서 1985년 이후 1992년까지 고용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반면 실업률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2-1995년 사이에 이러한 경향은 급격한 일자리 감소로 전환되었다. 특히 제조업같이 남성이 지배적인 분야에서 984.000개의 남성일자리와 390.000개의 여성일자리가 감소되었다(Engelbrech and Reinberg 1998, 43).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하였는데, 반면 탈산업 과정으로 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가 제공되어 여성이 진입하게 됨에 따라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실업률이 낮았다. 1996년 여성실업자의 수는 거의 120만이었고 남성의 실업자 수는 150만을 넘었다(Engelbrech and Reinberg 1997, 2).

www.kci.go.kr

족 구조의 변화도 70년대 이후 시작되었다. 이혼율이 증가하였고 단독가구와 한부모가정 및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90년대에 더 심화되었다. 슈피겔(Spiegel 1997, 78)의 연구에 의하면 90년대 가족 형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의 17%는 단독가구이었다. 그리고 모든 부부의 3분의 1정도가 이혼을 했고 그 중에 50%이상이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 이와 동시에 재혼율도 감소하였다. 한편,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약 86%는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한 부모 가족 중 42%는 빈곤상한선 하에 있었고 다른 형태의 가족보다도 빈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이 양부모가족(2%)보다도 한부모가족(26.9%)에서 13배나 높았다.

이러한 노동시장 및 가족 구조변화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 및 성별관계에 대한 젠더가치관도 변화하였다. 따라서 70년대 이후 여성들은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노동참여형태는 노동중단과 시간제 근로라는 특징을 드러내었다. 우선, 70년대에 여성들은 자녀출산 시에 노동을 중단하고 몇 년 후에 재취업을 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였다. 이 시기에 여성들은 자녀출산 후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시간제 근로를 할 기회가 있었고, 시간제근로를 통해 자녀출산 후에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Prinz 1994, 250).

이러한 경향은 1982-1998년의 콜(Kohl) 정부시기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70년대에 비해 특별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이러한 노동시장 참여형태는 노동시장정책 및 연금정책에서의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첫째, 이전 시기에 비해 90년대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별관계에 대한 여성의 의식에 변화가 있었는가? 둘째, 변화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게 서독국가는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젠더 가치관에 기반 한 정책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였는가? 등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며 90년대를 주 기점으로 서독의 사회정책, 정책에 내포된 젠더 가치관, 자녀가 있는 여성의 특별한 노동시장참여 형태 및 그로 인한 불이익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서유럽 국가에서는 60년대 이후부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혹은 일과 가족의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정책들이, 예를 들면, 보육정책, 양육휴가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정책이 기혼여성의 노동 참여와 일과 가족의 양립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다 (Anxo et al. 2000; Dingeldey 2002; Dingeldey 2003; Koch and Baecker 2004; Koch 2001; Rake 2001; Gottschall and Hagemann 2002; Orloff 2002; Finch 2003; Gottschall and Bird 2003; Gornick and Meyers 2003; Wehner and Abrahamson 2003; Randall 2002; Rosdahl and Weise 2000). 또한, 젠더 관점에서 사회정책의 성격과 여성노동시장 참여와의 관련성에 대한 다수의 선진복지국가간의 비교 제도연구들이 이루어졌다 (Lewis 1992, 2001, 2003, 2004; Orloff 1993, 2000; Lewis and Ostner 1994). 그리고 서유럽국가에서 좀 더 나은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다른 정치 영역에서의 정

www.kci.go.kr

책들이 연계되어 실행되었고, 그 결과들이 분석되었다 (Dingeldey and Reuter 2003a, 2003b). 시레와 곳찰(Shire and Gottschall 2007) 에 의해 국가의 역할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루어졌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에서 독일의 가족정책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진숙 2006, 2008; 임종헌·한형서 2011; 정재훈·박은정 2012; 한경헌·어윤덕 2011). 우선, 정재훈·박은정(2012)은 가족중심주의 관점에서 이론적 분석지표와 분석틀을 제시하며 독일 최근 가족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근의 독일 가족정책의 변화가 명백한 가족중심주의에서 선택적 가족중심주의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진숙(2006, 2008)은 젠더적 관점에서 최근까지의 가족정책의 변화와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낮은 수준의 양육수당이 성별분업을 유지하고 공보육 지원의 부족이 순차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은 가능하게 하나 동시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이 불가능한 성별분업적 특징을 보인다고 가족정책의 젠더적 성격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주로 국가복지정책이 지향하는 가치관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90년대를 주 기점으로 70년대부터 서독 여성들의 가족 및 성별관계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서독 여성들의 젠더 가치관의 변화를 검토하고 서독복지국가가 여성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며 정책지원을 하였는지와 지원된 정책들은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젠더 가치관, 즉 이인소득자 모델을 지향하는지에 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럽의 복지국가 사례를 통해 이론적 분석요소와 분석틀을 도출하며 사회정책, 정책에 내포된 젠더 가치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그 결과 간의 관련성에 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90년대에 보육정책 및 양육휴가정책, 노동시장정책과 연금정책의 어떤 구체적인 요소들이 변화되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분석하면서 젠더관점에서 어떤 제도 요소들이 정책의 성격 변화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피는 것이 이전 선행연구들과 차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연구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정책에 내포된 젠더 가치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결과간의 관련성에 관한 이론적 개념들과 복지국가의 정책지원과 여성의 가족 및 성별관계와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문화적 가치관간의 상호 모순과 충돌이 여러 면에서 불이익이 되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형태를 초래한다는 이론적 개념들을 소개한다. 이와 더불어 이론적 개념들을 토대로 이론적 분석틀을 도출하여 제시한다. 둘째, 90년대를 주 기점으로 70년대 이후 가족 및 성별관계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여성의 변화된 문화적 가치관을 다룬다. 셋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사회정책,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간의 관련성에서 양육휴가정책, 보육정책, 직업재교육프로그램, 연금정책을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 정책들의 젠더 가치관과 이들의 여성노동참여와 삶에 미치는 문제점과 불이익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에서 산출된 정책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평등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충분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정책들이 동일하게 이인소득자 모델에 기반 되어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성 평등적이고 보편적으로

www.kci.go.kr

충분하게 지원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개념들과 분석틀

1. 이론적 개념들

본 연구는 성별 관계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젠더 가치관, 자녀가 있는 여성의 특별한 노동참여 형태 및 이의 부정적인 결과와 사회정책간의 관련성을 다룬다. 우선 많은 학자들이 사회정책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별관계 혹은 노동 시장에서의 경력 및 삶의 질 보장 간에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보육정책과 육아휴직정책 같은 가족정책, 조세정책, 고용정책, 노동시장정책, 연금정책 등의 사회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연금 등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서의 경력 및 사회보장과 관련이 있다. 특히 소득보장이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과 소득에 기반 한 기여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 형태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 및 삶의 질 보장 수준과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관련이 있다(Pfau-Effinger and Geissler 1992). 특히 사회보장프로그램, 탈 중앙화된 사회서비스의 조직, 가족정책 그리고 조세정책은 결혼한 여성의 노동중단과 사회보장이 되지 않는 고용을 지원한다. 다시 말해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행태가 노동중단과 비지속적이고 저임금의 짧은 시간제 근로일 때 이것은 노동지원법에 의한 지원프로그램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노후보장의 위험을 초래한다.

홀스트와 마이어(Holst and Maier 1998, 506)는 사회정책, 정책에 내포된 이데올로기 그리고 인간의 행동 간의 상호밀접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그는 국가제도, 특히 사회정책 혹은 복지정책 법률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젠더계약, 즉 무보수노동과 보수노동을 위해 어떤 성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와 노동계약의 규범은 무엇이고 누가 이 노동관계에 소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가족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조정한다. 이러한 젠더계약과 노동계약은 서독에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생계부양자 전업주부모델) 및 정규직 노동관계로 특징지워졌다. 이 두 개념은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은 정규직 고용관계에서 자기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한 개념의 양면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제도는 이러한 양면성 위에서 형성되었다(HInrichs 1996).

반면에 다수의 학자들이 젠더 관점에서 사회정책, 정책에 내포된 젠더 가치관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삶의 질 간의 상호관련성을 유기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Lewis 1992; Lewis and Ostner 1994; Pfau-Effinger 1998). 이들의 연구 결과로 우선, 사회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젠더 레짐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젠더 레짐 내의 국가마다 다르다(Lewis 1992; Lewis and Ostner 1994). 이러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차이는 정책지원의 수준 및 방법과 정책에 내포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혹은 이인소득자 모델 등의 젠더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Lewis 1992, 2001, 2003, 2004). 이러한 관련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정책이 보편적으로, 충분하게, 성 평등적으로 그리고 국가에 의해 지원될수록 정책은 노동자로서 여성의 역

www.kci.go.kr

할을 지향하고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결과를 이끈다(이미화 2014).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노동시장과 가족의 구조 변화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의미가 쇠퇴하기 이전까지 서구 사회의 남성과 여성의 공존의 삶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결혼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파생수급자로서 남성에 의존한 사회보장획득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돌봄 노동을 책임지는 반면 남성은 공적 영역에서 생계부양자로 전일제 근로를 하는 공·사적 영역에서의 남녀의 역할분담을 전제한다. 서유럽 국가들은 어머니 및 아내 혹은 노동자로서의 여성 역할의 정도에 따라 강한, 변형된 그리고 약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로 분류될 수 있다(Lewis 1992). 그리고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약함과 강함의 정도는 정책지원의 수준 및 방법과 결혼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과 관련이 있다. 이를 테면 여성의 역할을 어머니 및 아내로 규정하는 강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기반 되어 있는 보육정책 및 육아휴직정책지원은 선별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급여 수준은 불충분하게 복지제공 주체는 민간의 존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지원이 여성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제 근로나 비지속적인 노동의 형태 그리고 순차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을 허용하는 등의 사적과 공적 역할 책임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이다(Lewis and Ostner 1994).

한편, 서구 사회는 70년대 이후, 특히 90년대 이후 노동시장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점차적으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의미가 쇠퇴하였다. 따라서 서유럽 국가들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성인노동자 모델 (Adult Worker Model) 혹은 이인소득자 모델(Dual Earner Model)로 로 사회정책의 젠더적인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며 이행하고 있다. 성인노동자 모델은 일할 능력이 있는 모든 성인의 유급노동에서의 노동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전제한다. 즉, 성인노동자 모델은 가정 내에서 어머니 및 아내로서의 역할 수행을 했던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정책지원을 통해 한 가정에 두 명의 성인이, 즉 남녀가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루이스(Lewis 2003,48)는 새로운 젠더가치관을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정치가 어느 정도로 정책에 여성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며 어느 대상을 지원하는 지, 어떻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과 수준으로 동시적인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지에 따라 성별분업과 여성의 노동참여에 다양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그는 질 좋은 돌봄서비스가 지원되어 해결되지 않는 한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이와 연결된 충분한 사회보장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루이스(Lewis 2001, 2003, 2004)의 연구들에서 노동지원 대상, 고용지원의 수준과 방법, 일·가정양립의 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등의 복지국가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정책지원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성인소득자 모델로의 이행과정에서 모든 성인의 노동시장참여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국가처럼 모든 정책 지원이 일괄적으로 성인노동자 모델에 기반 해서 연계되어 국가에 의해 보편적으로, 충분하게 그리고 성 평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젠더 가치관, 사회정책 그리고

www.kci.go.kr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와 삶의 보장간의 관련성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국가의 정책 지원과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젠더 가치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파우-에핑어(Pfau-Effinger 1998)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별관계 및 여성노동참여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에도 관심을 두었다. 그에 의하면 노동시장 및 가족구조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 국면에서 여성의 노동참여와 가족 및 성별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정책적 지원 요구에 서구의 복지국가는 다양하게 대응하여 각기 다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성별분업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한다.

모든 사회에는 가족과 성별분업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Pfau-Effinger 1998). 이러한 가치관은 최소한 5개의 다양한 젠더문화적인 모델 즉, 가족경제모델(das familienoekonomische Modell), 생계부양자 전업주부모델(das Hausfrauenmodell der Versorgerehe), 생계부양자 일·가족양립모델(das Vereinbarkeitsmodell der Versorgerehe, 국가의 보육지원이 있는 이인부양자모델(das Doppelversorgermodell mit staatlicher Kinderbetreuung), 남녀협력적인 보육을 하는 이인부양자모델(das Doppelversorgermodell mit partnerschaftlich Kinderbetreuung)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그에 의하면 사회구조적 변화 시기에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 속도가 다르거나 서로 모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도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의 지배하에 있는 반면에 여성 대부분의 젠더 가치관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과 불일치로 인해 제도는 여성의 변화된 문화적 젠더 가치관에 맞게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에 기반 되어 제한적인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파우-에핑어(Pfau-Effinger 1998, 2001)는 70년대에는 생계부양자 전업주부모델이 서독 여성의 지배적인 젠더 가치관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생계부양자 전업주부모델에서 일가족양립모델로 이행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제도는 이러한 새로운 여성의 젠더가치관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에 기반 된 복지국가 제도는 결과적으로 자녀가 있는 여성의 특정한 노동행태를 유인하고 이것과 관련한 노동경력이나 사회보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Pfau-Effinger and Geissler 1992).

뿐만 아니라 루이스(Lewis, 2003)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정책들이 서로 다른 젠더 가치관을 지향할 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된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정책들이 성인노동자 모델로 일관되게 연계되어 보편적으로, 충분하게, 국가에 의해 그리고 성 평등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2. 이론적 분석틀

위에서 언급된 이론적 개념들을 토대로 한 이론적 테제와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90년대 이후 서독은 불안정한 노동 및 실업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변화하고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및 사회적 구조변화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 및 성별관계에 대한 젠더가치관도 변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구조의 변화 시기에 제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젠더가치관의

www.kci.go.kr

지배하에 있는 반면에 여성 대부분의 문화적인 가치관은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과 충동으로 인해 제도는 여성의 변화된 젠더가치관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젠더가치관에 기반 되어 제한적인 수준으로 지원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삶의 질 보장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이론적 테제 하에 이루어진다.

<표 1> 이론적 분석틀

<table>
<tr><td></td><td>남성 생계부양자 모델</td><td>성인노동자 모델</td></tr>
<tr><td>1) 여성의 젠더가치관</td><td></td><td></td></tr>
<tr><td>여성의 역할</td><td>어머니 및 아내</td><td>노동자</td></tr>
<tr><td>노동시장 참여형태</td><td>순차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형태
경력단절, 비지속적인 고용</td><td>동시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형태,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인 고용</td></tr>
<tr><td>2) 지원정책</td><td colspan="2"></td></tr>
<tr><td>(1)양육휴가정책
(재정지원, 직장복귀)
(2)돌봄노동분배</td><td rowspan="2">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수준이 낮음</td><td rowspan="2">지원을 함,
그러나 지원수준이나 방법이 다름</td></tr>
<tr><td>(2)보육정책
(국공립종일보육서비스제공 수준, 정책지원대상 아동의 나이)</td></tr>
<tr><td>(3)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상황</td><td>순차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형태
경력단절, 비지속적인 고용</td><td>동시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형태, 그러나 지원 수준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차이가 있음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인 고용</td></tr>
<tr><td>(4) 재교육프로그램
(정책지원대상, 재정지원)</td><td>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수준이 낮음
지원대상 선별적이고 제한적</td><td>지원을 함, 그러나 지원수준이나 방법이 다름</td></tr>
<tr><td>(5) 연금정책
(연금수급권자, 탈상품화 정도)</td><td>여성은 연금 피수급권자
파트너 혹은 배우자 및 국가에
경제적 의존
탈상품화 정도는 낮음</td><td>여성 연금수급권자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적
개인화 달성을 지향
탈상품화 정도는 여성 개인의 노동시장 참여형태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남</td></tr>
<tr><td>3) 정책간의 연계</td><td colspan="2">여성의 젠더가치관과 국가 복지제도가 지향하는 젠더가치관간의 관계가 혹은 여러 분야의 정책들간의 연계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로 혹은 각기 다른 모델로 되는 것보다 성인 노동자 모델로 동일하게 연계될수록 동시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 지원, 그러나 정책지원 수준에 따라 다름</td></tr>
</table>

한편, 90년대를 주 기점으로 서독의 사회정책, 정책에 내포된 젠더가치관,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형태와 이로 인한 불이익 혹은 배제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첫째, 이전 시기에 비해 90년대를 중심으로 여성의 젠더가치관의 변화가 어떤 젠더가치관을 지향하는지 검토를 한다. 여성의 역할을 어머니 혹은 아내로 인식하고 여성의 고용형태에 있어 자녀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비지속적인, 즉 순차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

www.kci.go.kr

을 동의할 때 이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여성의 변화된 젠더가치관에 상응하게 국가가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벗어나 성인노동자 모델 혹은 이인소득자 모델에 기반하여 정책지원을 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정책 지원수준과 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경력 혹은 사회보장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기반 한 정책은 성 평등하지 않게 선별적인 대상을 충분하지 않은 재정지원으로 하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개인이나 시장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지원이 여성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제 근로나 비지속적인 노동의 형태 그리고 순차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을 허용하는 등의 사적과 공적 역할 책임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여러 분야의 정책 간의 연계가 혹은 여성들과 국가의 지원 정책이 서로 다른 젠더 가치관을 혹은 동일하게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지향할 때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나 사회보장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나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Ⅲ. 여성의 노동참여와 성별관계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생계부양자 전업주부모델에서 이인소득자 모델 혹은 동시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모델로의 변화

여성들의 노동과 성별관계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70년대 이후 생계부양자 전업주부모델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모델로 변화되었다(Pfau-Effinger 1999,139). 새로운 가치관은 어머니의 노동시장참여를 예견하면서 동시에 사적인 자녀양육을 지지한다. 즉, 이 가치관은 여성은 자녀출산 후 몇 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다가 이어 시간제 근로를 기반으로 자녀가 더 이상 돌봄이 필요 없을 때까지 일과 가족의 양립의 추구를 전제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문화적 변화는 9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전업주부모델은 쇠퇴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과 사적 유년기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변화지 않았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이러한 변화는 젊은 여성들의 인생설계의 변화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6·70년대에 젊은 여성들의 인생계획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통일성이 있게 전통적인 여성의 생애를 지향하였는데, 이후 점차적으로 여성의 취업은 사회적 인정을 획득했다(Geissler and Oechsle 1996,15). 80년대 이후 여성의 인생설계는 변화하였다. 전통적인 성별분업은 명확하게 동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2년 소녀와 젊은 여성의 자아에 대한 이해에서 아직도 여성이 우선적인 자녀양육의 책임자이었다(Prinz 1994,253).

90년대에는 현대화된 문화적인 가치관이 뚜렷하게 확산되었다. 20-30세의, 중간 정도의 직업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리고 자녀가 없는 젊은 여성들의 인생설계에 이중적인 인생계획이 지배적인 가치관으로써 명백하게 나타났다(Geissler and Oechsle 1996, 279). 이 젊은 여성들은 지속적인 고용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의 인생계획은 이중적인 설계로서 정의 내릴 수 있고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 지속적인 고용은 단절이 없는 지속적인 종일제근

www.kci.go.kr

로가 아니라 가족적인 조건으로 인한 제한된 노동중단국면과 시간제근로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90년대 젊은 여성의 대부분은 어머니로서 몇 년 동안 노동중단을 한 후 이어서 자녀가 더 이상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기반으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원하였다(Geissler and Oechsle 1996,125). 이들에게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생애주기에서 직업은 한시적으로 가정 내의 노동에 종속된다(Pfau-Effinger 1999,142). 여성의 정체성에 있어서 이 시기의 직업은 아동과의 관계보다 덜 중요하다. 후에 어린 자녀가 있는 생애국면이 종결될 때에 직업은 다시 의미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젊은 여성들은 자녀양육 생애국면에서 자기 자신을 전업주부가 아니라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서 자각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노동의 비지속성은 개인의 주관적인 지속구조를 통해 극복된다. 즉 자녀양육 생애국면은 이중적인 인생계획을 가진 여성들에게 있어 직업포기가 아니라 지속적인 직업 속에서의 일종의 휴식으로 다가온다(Geissler and Oechsle 1996, 126). 그들은 다시 직장으로의 복귀를 예상한다. 그러면서 가족적인 이유로 인한 노동단절의 극복을 의미하는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기대한다. 직업훈련과 직업의 안정성을 통해 이전 직장에서 했던 것처럼 일하기를 원한다. 그 외에 지속적인 고용은 고용형태와 고용관계와도 관련이 있다.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희망하는 남녀의 노동시간 형태에 대한 질문에 답한 진술에서 다양하고 상이한 남녀의 노동시간 형태를 엿볼 수 있다(Engelbrech and Jungkunst 1998,11). 4-6세의 자녀가 있는 일하는 여성의 53%는 시간제 노동시간형태를 선호하고 7%만 1인만 종일제로 일하는 형태를 원했다. 이 외에 12%가 둘 다 종일제 근로시간형태를 혹은 15%는 종일제보다 적게, 그러나 일반 근로시간의 반 이상이 되는 근로시간 형태에 관심을 두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90년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가치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자녀가 있는 많은 여성들은 자녀가 더 이상 돌봄이 필요 없을 때까지 자녀양육기에 시간제근로 형태를 선호하나 지속적이고 사회보장이 되는 시간제 근로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관계 및 가족과 노동에 대한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 검토를 통해 특히 90년대 이후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의 가치관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 모델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홀스트와 마이어(Holst와 Maier 1998,510)가 서독에서는 남녀 간의 고용과 가정 내의 노동의 영역에서 동등한 분배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처럼. 여성들은 자녀출산 후 몇 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다가 이어서 자녀가 더 이상 돌봄이 필요 없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이 되는 시간제 근로를 바탕으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원하였다.

Ⅳ.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사회정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 및 이로 인한 불이익

메달의 양 측면처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정규직고용관계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개념은 서독복지국가의 사회정책 및 복지관련 법 규정의 가치관으로 역할을 하였다. 정규직 고용관계(Normalarbeitsverhältnis)는 자립적인 노동관계로서 노동경과와 고용형태가 지속적이고

www.kci.go.kr

안정적이다. 이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정규직 고용관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남성 생계부양자가 가정 내의 무보수 노동으로부터 면제받는 대신 가족부양을 위해 그의 총 노동시간과 노동력을 소모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에 가정 내의 노동은 여성에 의해 전담된다. 보수노동은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에게 의무화되지 않았으나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부가적인 소득자로서 기대된다. 이러한 정규직고용관계 및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두 개념은 서독의 90년대의 사회정책, 노동시장정책, 가족정책 및 조세정책에 전제되었다(Gottschall and Dingeldey 2000; Hinrichs 1996; Holst and Maier 1998; Quack 1993).

1. 양육휴가정책

독일에서는 1952년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을 제정하여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6주씩 12주 동안 산전후휴가(Mutterschutz)와 산전후휴가급여(Mutterschaftsgeld) 지급을 보장하였다. 1979년에는 양육휴가의 근간이 된 모성휴가(Mutterschaftsurlaub)와 휴가급여 (Mutterschaftsurlaubsgeld)가 도입되었고, 6개월 동안 휴가와 급여가 보장되었다. 그 후 1986년에 연방양육수당법(Bundeserziehungsgeldgesetz)이 제정되어, 10개월간의 양육휴가와 양육휴가수당이 보장되었다. 이후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여러 번 개정되었다.

1992년부터는 양육휴가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었고, 사회보험에 가입된 남녀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양육휴가는 한 쪽 부모만이 실시할 수 있었으나 세 번까지 부모가 교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육휴가 수당은 18개월 동안 보장되었다. 그러나 1993년 이후부터는 24개월로 양육휴가수당의 급여지급 기간이 확대되었다. 양육휴가 수당은 휴가사용자가 일하지 않거나 주당 19시간까지 파트타임제로 일하는 조건에서 지급되었다. 그리고 양육휴가를 마친 후, 이전의 업무 또는 그와 동일한 업무로의 복구가 1992년부터 보장되었다.

<표2> 1952년 이후 모성보호와 양육휴가 정책의 변화

연수	휴가	급여명칭	급여기간	휴가기간
1952-1968	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수당	산전6주, 산후6주	산전6주, 산후6주
1968-현재	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수당	산전6주, 산후6주	산전6주, 산후6주
1979.7.1-1985.12.31	모성휴가	모성휴가수당	6개월	6개월
1986.1.1-1987.12.31	양육휴가	양육휴가수당	10개월	10개월
1988.1.1-1988.12.31	양육휴가	양육휴가수당	12개월	12개월
1989.1.1-1990.6.30	양육휴가	양육휴가수당	15개월	15개월
1990.7.1-1991.12.31	양육휴가	양육휴가수당	18개월	18개월
1992.1.1-1992.12.31	양육휴가	양육휴가수당	18개월	36개월
1993.1.1.-2000.12.31	양육휴가	양육휴가수당	24개월	36개월

자료: Bird, 2001. P. 62

www.kci.go.kr

70년대 이후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노동중단과 시간제근로로 특징을 나타냈다. 곳찰과 버드(Gottschall and Bird, 2003)에 의하면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노동중단의 실시 및 기간과 직장복귀의 시점과 관련해서 모성휴가의 규정으로 규격화되었다고 한다. 즉, 서독 여성들은 무엇보다도 자녀출산 이후 일을 중단하고 양육휴가를 실시하였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양육휴가의 도입과 확대는 어머니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Gottschall and Bird 2003; Holst and Schupp 1996; Landenberger 1991). 1995년 양육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여성의 98%가 양육휴가를 실시하였다.

곳찰과 버드(Gottschall and Bird 2003)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양육휴가를 실시하였다고 하였다. 1992년 양육휴가가 3년으로 확대되고 이전 직장으로의 복귀가 보장되었는데, 이후 어머니의 거의 90%가 양육휴가를 실시하였고 3.4%만이 중단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였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양육휴가 후 직장으로 복귀를 하였는데 여성의 52%가 법이 규정한 것보다 더 오랫동안 42개월 정도로 휴가를 실시하였다. 여성의 23%는 30개월을 지나서 직장으로 복귀하였고 적은 수의 여성만이 2년 내로 복귀하였다. 반면에 모성휴가나 단기 양육휴가처럼 휴가기간 규정이 짧을수록 사용하는 휴가 기간이 짧고 직장복귀 시점도 빠른데, 모성휴가로부터 1년 후 혹은 짧은 양육휴가로부터 18개월 후 어머니의 40%가 직장복귀를 하였다(Gottschall and Bird 2003, 125). 이를 통해 이전시기보다 1992년 법 개정으로 양육휴가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 이후 여성들이 자녀출산 후 완전히 노동중단을 하고 양육휴가를 더 오랫동안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휴가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 상이하였다(Gottschall and Bird 2003). 고학력 여성들은 법 규정대로 장기 양육휴가를 완전히 다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종일제 근로를 위해 자녀양육과 가사를 위한 대체 인력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저학력이고 낮은 노동지위에 처한 여성은 법이 정한 기한을 완전히 활용하고 재취업 시에는 시간제근로 혹은 짧은 시간제 근로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양육휴가의 사용기간은 이어지는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복귀 보장은 90년대의 고용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행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기한을 넘어서 양육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재취업은 용이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시간제 일자리 부족(24%), 부족한 보육서비스 제공(24%), 부족한 직업기술(13%) 그리고 나이(15%) 등이 양육휴가자의 재취업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다(Prinz 1994,254). 이를 테면 1995년 말 1990-1992년에 양육휴가를 실시한 근로자의 반은 3-5년 중단을 한 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 중의 3분의 1일은 자녀출산으로 다시 양육휴가를 실시했고 7분의 1은 일하고 싶었으나 자녀양육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그 외에 10분의 1은 취업에 관심이 없었고, 1%는 실업신고 혹은 구직을 하였다(Engelbrech, Gruber and Jungkunst 1997, 163).

그리고 양육휴가의 실시는 생활수준보장의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양육휴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지 않거나 주당 19시간까지 일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제한으로 일을 중단하거나 짧은 시간제 근로를 선택함에 따라 임금 대체 수준의 근로소득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 외에도 낮은 수준의 양육휴가 급

www.kci.go.kr

여 및 급여 수혜를 위한 소득상한성은 가족의 큰 재정적인 악화를 가져왔다. 원래 양육휴가 수당은 6개월까지는 조건 없이 다 지급하고 7개월째부터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첫 번째 달부터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 첫 6개월 동안 부부가구는 100.000 DM, 한 부모 가구는 75.000 DM이 연간 소득 상한선이었고 7개월째부터는 부부가구는 29.400 DM, 한 부모가구는 23.700 DM의 연간 소득까지 전액이 지급되었다.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낮아져서 이로 인해 1987년 7개월째부터 양육휴가수당 전액을 받는 가구는 83,6%에 달하였는데 1998년에는 52.2%로 급감하였다. 또한 1986년에 600DM으로 양육휴가수당이 도입되었는데 이후 임금소득의 상승에도 조정이 되지 않아 1999년에는 실제가치가 460DM으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600DM의 양육휴가수당은 양육휴가로 인한 소득의 손실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이 적은 여성에 의해 휴가기간 동안 가정 내의 돌봄 노동이 수행되었다. 남녀가 세 번까지 번갈아 양육휴가를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어도 낮은 수준의 양육휴가수당은 남성들이 휴가를 실시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우선, 1995년 양육휴가를 실시한 자 중에 98%는 여성이었고, 반면에 남성은 1.8%만이 실시하였다(Schneider and Rost 1998, 219; Vaskovics and Rost 1999, 42). 1993년 어린 자녀가 있고 종일제 근로를 하는 남성은 양육휴가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90년대 경제 위기와 3년으로 휴가기간이 연장된 것은 남성에게 있어 반대의 유인효과를 내었다. 이미 종일제 근로를 하는 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남성의 44%는 그들의 노동시간을 확대하였다. 최대 600DM이라는 낮은 수준의 양육휴가급여는 가족을 부양할 소득 대체 수준이 되지 않고 양육휴가로 인한 소득손실은 더 높은 소득을 버는 남성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주로 여성이 휴가를 실시하였다. 이는 여성의 소득이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남성의 78%는 첫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배우자보다 뚜렷하게 더 많이 벌었다. 게다가 총 가구의 92%는 두 번째 자녀 출산 전 남성의 월 소득이 배우자보다 더 높았다. 그 결과 배우자간 평균 매월 순소득의 차이가 첫 자녀 출산 전에는 1.020 DM에서 둘째 자녀 출산 전 2.678 DM으로 증가하였다(Vaskovics and Rost 1999, 45).

결론적으로 보면, 1992년 법 개정으로 남녀근로자가 세 번까지 번갈아 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양육휴가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고 이전 직장으로의 복귀보장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양육휴가 사용률도 높아지고 이전 시기보다 더 오랫동안 휴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전의 직장복귀보장에 있어 법이 규정한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면 이전 직장의 복귀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의 휴가 사용자들이 법이 규정한 기간 보다 더 오랫동안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재취업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양육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을 중단하거나 짧은 시간제 근로를 선택해야 했다. 이와 더불어 낮은 수준의 양육휴가급여 및 급여 수혜를 위한 소득상한성과 임금 상승에도 낮은 급여의 수준이 조정되지 않음으로 임금을 대체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가정의 재정악화를 가져왔다. 이런 낮은 수준의 재정 지원으로 한 가정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소득을 버는 남성의 휴가 사용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휴가를 사

www.kci.go.kr

용하게 되어 전통적인 성별분업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보육정책

아이를 둔 일하는 여성을 돕기 위한 보육정책의 변화도 있었다. 독일에서 가족 내의 돌봄은 전통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 했다. 그리고 가족정책에서는 서비스 급여보다는 현금급여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아동보육이나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은 충분하지 않았다(Kaufmann 1995). 따라서 아동양육은 가족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여, 보육시설 및 유치원 그리고 학교가 반일제로 운영되었다(Gottschall and Hagemann 2002). 특히 3세미만의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은 매우 부족하였고 보육시설 이용률도 낮았다. 베커(Becker 1999, 204)의 연구에 의하면 1994년 서독에서 3세 미만의 아동 중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은 2.2%이었고 종일제 보육시설 이용률은 1.7%이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북쪽지역이 남쪽지역보다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았다. 반면에 3-6세 미만의 아동 중 유치원 이용률은 85.2%에 이르렀고 종일제 보육시설 이용률은 단지 14%뿐이었다(Becker 1999,204). 이러한 유치원 이용률은 90년대보다 70년대에 변화의 폭이 컸다고 할 수 있다. 1970-1980년 사이의 유치원 이용률은 38%에서 78%로 급증한 반면에 1986-1994년 사이의 유치원 이용률의 변화의 폭은 79%에서 85.2%로 크지 않았다. 게다가 1994년 유치원시설의 83%가 오전반 및 오후반 등의 반일제 혹은 점심식사를 겸한 반일제가 대부분이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와 보육서비스 제공과의 관계에 대한 쉬어스만(Schiersmann 1995)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6세 미만의 자녀의 돌봄이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반일제로 이루어졌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3세 미만의 유아들의 돌봄은 대부분이 어머니 자신(84%)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서독의 일하는 여성들이 시간제 근로를 기반으로 스스로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가능했다(Engelbrech and Jungkunst 1998, 3)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배우자 혹은 파트너(34%), 조부모(45%), 친척(10%), 사적 돌봄(10%)등과 같이 돌봄이 사적으로 이루어졌고 공공영아보육시설(Kinderkrippe)은 5%로 아주 미미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3-6세의 아동들의 돌봄에서도 사적 돌봄은 여전히 큰 의미가 있었다. 이 연령 아동의 69%는 어머니 자신(69%), 배우자 혹은 파트너(31%), 조부모(33%), 친척(8%) 그리고 사적 돌봄(7%)같이 사적으로 돌봄이 이루어졌다. 공공유아시설에서는 57%로 3-6세 아동의 돌봄에 있어 영아보다는 공적 유치원(Kindergarten)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과 가족의 양립 개선을 위해 서독의 일하는 여성들은 공공보육시설과 종일제 보육서비스 제공의 확대를 원하였다[2].

(Schiersmann)의 연구를 통해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서독 여성들의 대부분은 일하지 않거나 시간제근로를 하였는데, 이는 공적보육시설의 부족과 반일제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

2) 3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일하는 서독여성들은 노동시간 동안 직장 내에서의 보육(35%) 혹은 집 근처의 종일제 보육시설(29%)을 원하였다. 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점심식사가 있는 반일제(25%), 좀 더 이른 보육시설의 개점시간(16%), 지속적인 개점(23%), 저녁 보육시간 연장(10%), 휴일보육(27%), 집 근처 보육시설(4%), 노동시간 동안 직장 내에서의 보육(20%)을 원하였다.

www.kci.go.kr

6년부터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유치원 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이 법적 권리는 시간제 근로 기반 위에 보장되는 것이다. 이는 종일제와 3세 미만의 아동보육(Krippebetreuung) 혹은 6세 이상의 초등학생보육(Hortbetreuung)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항상 부족하였다.

이러한 부족한 공적 보육시설과 반일제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은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노동중단 혹은 양육휴가 이후 재취업 시에 짧은 시간제 근로를 택하거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의 어려움을 갖게 할 수 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1995년 말 양육휴가 실시자의 반이 양육휴가 후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는 보육서비스의 지원 부족으로 인한 자녀출산 및 양육의 문제 해결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부족하고 반일제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은 1.5인(Anderthalb-Person)을 전제하는 직업체계와 연동되어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사회보장이 되는 종일제 고용형태에서의 취업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직업체계는 항상 직업생활에서 매일 8시간 이상을 일할 것과 반면에 가정 내의 가사와 돌봄 노동으로부터 면제 받는 것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초과근무시간도 가정하나 출퇴근 같은 시간은 고려되지 않는다(Kruger 2000, 17; Schiersmann 1995, 100). 이런 맥락에서 1992년 지속적인 주당 노동시간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주당 노동시간은 38.1시간이었다. 여기에다 휴식시간 및 출퇴근 시간까지 합하면 종일제 근로를 위해 매일 9.2시간이 필요하다(Backer and Stolz-Willig 1993, 547).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종일제 근로와 가정 내에서의 무보수 노동을 양립하기가 어렵다. 즉, 초과근무와 긴 휴식시간이 일상적인 종일제 노동과 반일제 보육서비스는 서로 맞지가 않으므로 종일제로 일하는 여성들은 일과 가족의 양립이 어렵다. 그래서 시간제 근로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4시간의 시간제 근로 또한 반일제 보육서비스에 맞추기가 쉽지 않고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서는 종일제 혹은 시간제 근로이든 돌봄 노동을 위해 반쪽짜리 인력, 즉 일종의 시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이 이러한 인력을 고용할 수 없거나 고용을 원하지 않을 때 짧은 시간제 근로(Geringfügige Teilzeitarbeit)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국공립종일보육시설 및 3세 미만의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부족 등의 은 정책지원 수준은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오히려 이것은 경력단절이나 혹은 시간제근로 특히, 짧고 사회보장도 되지 않는 불안정하고 짧은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여성의 역할을 사적 영역에서 어머니 혹은 아내로 규정하고 제한하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관련이 있다.

3.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의 현황

1) 결혼한 여성의 일에 대한 관심과 경제활동

60년대 중반 이후 일하기를 원하는 결혼한 여성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90년대 초 노동시장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일에 대한 욕구는 일하지 않는 여성들의 높은 구직에 대한 준비에서 볼 수 있다(Engelbrech et al.

www.kci.go.kr

1997, 152).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의 10분 1 이상 혹은 18-60세 여성의 6%정도가 일자리를 찾았다. 이들 중 46%는 좀 더 나은 직업을 구할 기회를 위해 추가적인 직업훈련을 하고 32%는 덜 관심을 끄는 일도 취하였다. 이러한 일에 대한 욕구는 일하지 않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일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초 노동시장의 위기는 점차로 증가하는 여성의 일에 대한 욕구를 실현화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여성노동 참여가 종일제에서 시간제 노동형태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80년대에 비해 정체되었다. IAB(Engelbruch, Gruber and Jungkunst 1997,153)에 의해 조사된 결혼한 서독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시대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결혼한 서독 여성들 중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1977년 38%에서 1986년 46%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1995년에는 48%로 증가율이 80년대에 비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혼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어느 특정한 연령집단에서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결혼한 여성의 점차 증가하는 노동시장참여의 경향은 6-15세 연령의 아이가 있는 여성(48%에서 60%로)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개 35-45세(52%에서 57%로)와 45-55세(43%에서 58%로)의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반면에 25-35세(52%에서 41%로)와 6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33%에서 28%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되었다.

같은 시기에 종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결혼한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1986년 19%에서 1995년 28%로 증가하였다. 모든 연령대의 결혼한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70년대 이후 증가하였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35-45세와 45-55세의 여성의 시간제 근로비율은 평균이상으로 강하게 급증하였다. 반면에 결혼한 여성의 종일제 근로는 1986년 27%에서 1995년 20%로 감소되었으나, 45-55세의 여성 집단만이 예외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엥엘브레히 외(Engelbrech et al. 1997)의 연구에 의하면 1986-1995년 기간에 전체 여성근로자와 결혼한 여성의 노동시장의 참여는 상이한 특징을 나타낸다고 한다. 전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에서 59%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후자는 46%에서 48%로의 미미한 증가를 보였다. 시간제근로비율에 있어서는 전자는 15%에서 24%로, 후자는 19%에서 28%로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의 종일제 근로비율은 정체되었으나 후자의 비율은 27%에서 20%로, 특히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결혼한 여성의 종일제 비율은 33%에서 28%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의 연령이 어떠하든 자녀가 있는 여성의 종일제 비율은 감소하고 시간제 근로는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90년대의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 감소는 양육휴가의 개혁과 3-6세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재취업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Engelbrech and Reinberg 1998, 75).

2) 자녀가 있는 여성의 전형적인 노동참여 형태

이전 시기에 비해 90년대 이후 결혼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미약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은 후퇴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는 비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형태와 시간제 근로의 특징을 보인다. 즉, 90년대에 6

www.kci.go.kr

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자녀출산 이후 일을 더 오래 중단했다가 재취업 시 시간제 근로 형태를 기반으로 비지속적인 노동참여 형태를 보였다.

70년대 이후 여성은 자녀 출산 후 경력중단과 시간제 근로 형태로 노동시장 참여를 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특히, 양육휴가의 도입과 점차적인 확대 이후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 특징은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홀스트와 쉬프(Holst and Schupp 1996)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들은 SOEP의 자료를 활용하여 1984-1993년의 시기(Periode)를 세 시기로, 기간 I(1984-1987), 기간 II(1987-1990), 기간 II(1990-1993)으로 I 나누어 자녀의 유무, 연령, 고용형태 및 고용지속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변화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Holst and Schupp 1996, 176-177)에 의하면 우선, 자녀출산 후 노동중단을 하고 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은 여성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기간 I에서는 비율이 23%에서 기간 III에서는 35%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고용 상태를 보게 되면 기간 I에서는 17%가, 기간III에서는 11%만이 기간 내에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간 내에 다른 일 혹은 직업으로의 이행의 변화를 보면 1번 이상 다른 직업으로의 이전한 비율이 기간 I의 14%에서 기간 III에서는 22%로 높아졌다. 이를 통해 90년대 이후 젊은 여성들은 기간 I보다 1990-1993년 사이인 기간III에서 자녀출산 직후 완전히 그리고 더 오랫동안 노동중단을 한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비지속적인 노동형태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형태와 관련하여(Holst and Schupp 1996, 179-180, 182-183) 자녀출산 후 기간 내에 한번이라도 시간제 근로를 한 여성의 비율이 기간 I에서는 48%, 기간III에서는 53%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지속적이지 않았다. 자녀출산 후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의 지속적인 시간제 근로비율은 모든 시기에서, 기간 I 8%, 기간 II 4%, 기간 III 6%로 평균이하의 낮은 수준이었다. 모성의 시기라 할 수 있는 26-35세의 젊은 여성들도 모든 시기에 지속적인 시간제 근로의 비율은 낮았다. 그러나 36-45세의 여성, 즉 6-15세의 자녀를 가진 여성들에게 있어 시간제 근로는 기간 III에서 지속적인 고용형태로서 의미를 획득하였다. 반면에 종일제 근로는 지속적인 근로형태로서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의미가 상실되었다. 특히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지속적으로 종일제 근로를 하는 비율은 13%에서 4%로 감소되었다. 대신 자녀가 없는 여성들에게 종일제 근로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편, 한 연구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더라도(Engstler 1997, 115)자녀가 있는 여성들에게 시간제 근로는 노동시장 참여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의 여성 노동시장참여가 이전 시기보다는 미미한 증가를 보였을지라도 시간제 근로 기반 위에 확대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6세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주 20시간 이하의 시간제 근로 비율은 1972년 7.7%에서 1996년 18.6%로 확대되었다. 반면에 이들의 종일제 근로비율은 18.2%에서 10.6%로 축소되었다. 게다가 사회보장이 의무적인 시간제 근로의 비율은 7.9%에서 5.8%로 감소되었다.

www.kci.go.kr

4. 직업재교육 프로그램

고용촉진법(Arbeitsförderungsgesetz)은 1969년에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 직업재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70년대 중반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고 특히 통일 이후 구조적인 실업의 증가와 노동시장 위기 속에서 개혁되었다. 1969년 제정된 고용촉진법은 예방적으로 노동시장 조정을 통해 높은 취업률과 불안정한 고용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는 직업재교육(Fortbildung und Umschulung)에 대한 법적 권리가 보장되었다. 이와 더불어 생활비와 수강비용도 보장되었다. 생활비는 마지막 실소득의 90%으로 임금대체 수준이고, 물질적인 생계부양을 보장하고 프로그램 참여에의 유도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1976년 1월1일에 예산구조법(Haushaltsstrukturgesetz)에 의해 첫 번째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정책 지원 대상자가 모든 근로자에서 실업자로 바뀌면서 우선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한정되었다. 즉 지원은 근본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이전 지난 3년 내에 최소한 2년 동안 사회보장이 되는 일자리에서 일을 했거나 혹은 실업급여와 실업부조를 받은 근로자에 제한되었다. 게다가 긴급형과 목적형 프로그램으로 구별되었다. 긴급형 프로그램은 실업자와 실업의 위험에 직면한 근로자 그리고 직업 수료증이 없는 자만 지원 대상이었다. 그리고 생활비도 감축되었는데 긴급형 프로그램은 마지막 실소득의 80%, 목적형 프로그램은 58%로 실업급여 68%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되었다.

한편, 고용촉진법은 1993년 초부터 1994년까지 11번의 개정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개정으로 재정을 견실하게 구축하자는 생각에 의한 직업재교육정책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고 직업재교육프로그램이 변화하였다. 직업재교육의 목적은 예시적이고 예방적인 훈련에서 단기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반응하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이에 상응해 지원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실업자와 사회보험가입자로 제한되었다. 생활비 지원수준은 뚜렷하게 감소되었다.

1994년 제11차 법 개정으로 직업재교육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변화로서 생활비와 수강비용 등과 같은 개인적인 지원에 대한 법적 권리가 폐지되었다. 그래서 긴급형 프로그램의 생활비와 수강비용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한 법적 권리는 노동청의 평가 업적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은 노동청의 조사와 승인에 의해 보장되었다. 이를 위해 3년 내에 2년 동안 사회보장이 되는 일자리에 고용되었거나 실업급여 혹은 실업부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전제되었다.

이와 동시에 생활비의 수준이 1993년 마지막 순소득의 65%에서 1994년 60%의 실업급여 수준으로 떨어졌다. 생활비 수급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실업자는 수강비용만 보장되었는데, 이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 후 이어서 최소한 3년 동안 사회보장이 되는 일자리에 고용되어야 함을 의무화하였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지급되었던 것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었다.

이러한 직업재교육에 대한 법 규정은 여성의 직업재교육프로그램 참여에 영향을 끼쳤다. 빌켄스(Wilkens 2005,512)의 연구에 의하면 생활비를 지원받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30.1%가 생활비 지원이 없었다면 참여를 포기했을 것이라는 대답을 하였는데 이로써 생활비 지원이 직업교육준비 혹은 참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활비 지원대상자의 전제조건과 충분하지 않은 재정적인 지원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진입에 부정

www.kci.go.kr

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비지속적인 노동경력을 가졌거나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었다. 90년대의 생활비 지원 대상 자격조건은 70년대보다 더 제한적이었고 생활비 지원 수준은 더 낮고 감소되었다.

직업재교육 프로그램에 여성의 참여는 70년대와 80년대의 시기에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참여비율은 1979년 27.7%에서 1984년 29.3%를 걸쳐 1988년에는 33.7%로 증가하였다(Ochs and Seifert 1992, 443). 이러한 증가 경향은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나타나지 않았다(Gottschall 1991, 401). 성별 및 여성 내부에도 차이를 보였는데, 1988년 여성의 직업재교육 참여비율은 13%이었고 남성의 참여율은 23%로 더 높았다. 그리고 80년대 중반 이후 고학력의 지위가 높은 여성들의 직업교육 참여율은 거의 정규직 남성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학력이 낮고 시간제근로를 특히, 짧은 시간제근로를 하는 여성의 참여비율은 낮았다.

90년대에도 여성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의 미미한 참여증가와 비지속적이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직업교육에서의 배제는 특징적이었다(Ochs and Seifert 1992; Ochs and Seifert 1994; Wilkens 2005). 이와 더불어 사회 계층간의 참여율의 차이도 여전하였다.

정리해보면, 90년대의 보육정책과 양육휴가정책의 결과로 어린 자녀가 있는 서독 여성들은 특히, 저학력의 여성들은 노동 중단과 비지속적이고 짧은 시간제 근로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재취업에서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법 개정으로 지속적으로 직업재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는 실업자와 사회보험가입자로 제한되고 선별되었다. 이와 더불어 생활비 지원 수준은 뚜렷하게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청의 조사와 승인에 의해 보장받게 됨으로써 수혜절차가 까다롭고 엄격해졌다. 이러한 정책지원수준과 방법은 자녀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노동중단과 비지속적인 시간제 근로를 하는 여성들의 직업재교육프로그램의 참여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정책 지원수준과 결과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특징과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5. 연금정책

독일의 연금에 대한 법적 권리는 임금노동을 전제하고 보험의 원리에 의해 보장된다. 이러한 임금노동은 노동시간과 지속기간과 관련하여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노후보장의 수준은 1957년 연금개혁법 이후 수지상등의 원칙(Äquivalenz)에 의해 소득을 기반으로 한 보험료에 비례하였다. 따라서 노동지위와 임금소득에 따른 사회보장의 선별성이 존속되었다. 따라서 1957년 연금개혁법에서 모든 보험가입자의 평균 근로소득의 60% 수준의 연금은 40년간 종일제 근로를 통해 획득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평균소득자가 26년간 혹은 평균 근로소득의 66%를 버는 근로자가 40년간 보험료를 지불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비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Quack 1993, 35). 그래서 완전히 가치가 있는 노후보장은 정규직 고용형태 즉, 평생 지속적인 종일제 근로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노동경력은 비지속적이고 자녀양육의 이유로 시간제근로에 종사하였다. 그래서 은퇴시기에 여성들의 평균적인 보험기간은 24,3년이고 근로소득에 따른 연금조정계

www.kci.go.kr

수(Entgeltrelation)은 평균이하로서 노동자연금보험에서는 0,56, 근로자연금보험에서는 0,75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여성의 평균적으로 짧은 보험기간과 낮은 수준의 임금소득은 1957년 연금개혁법 이후 여성들의 노후연금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쳤다.

반면에 1972년 연금개혁법을 통해 과거의 차별을 조정하기 위해 최저 임금에 대한 연금을 도입하였다. 이 법에서 1972년 이전까지의 보험가입기간도 최저 임금에 대한 연금제도를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연금을 조정하였다. 연금산정을 위해 모든 저임금을 모든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75%의 가치로 상향조정을 하였다. 여기서 시간제근로형태로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도 이익을 얻었는데 이러한 규정은 보험 기간이 25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한정되었다.

그러나 위의 규정이 1992년 연금개혁법에 의해 1992년 보험가입연도까지 25년 대신 35년으로 확대하였다. 더불어 이전처럼 모든 저임금에 대한 연금조정이 같게 높은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내에서도 구분을 하여 평균 개인의 측정기준의 1,5배를 하여 최대한 모든 가입자의 평균 근로소득의 75%까지 상향조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1972년 연금 개혁을 통해 최저 임금에 대한 연금은 낮은 소득으로 인한 차별을 조정하였고 시간제 근로로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도 이익을 볼 수 있었던 반면에 1992년 연금개혁법의 최저 임금에 대한 새로운 연금산정방식은 최저소득층 일부와 시간제 근로자의 짧은 근로시간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이전처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사례가 시간제 근로와 이로 인한 평균이하의 낮은 임금수준이 정규직 근로와 시간제 근로사이의 연금차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노후의 보장 수준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직 근로형태로 평균 40년 동안 일을 했을 때 연금은 월 1558DM에 이르렀는데 반일제로 근로했을 경우 767,80DM으로 2배 차이가 났다. 40년 동안 반일제와 평균소득의 70%만 소득을 벌 때 얻는 연금은 537,6DM으로 정규직 근로자 연금의 3분의 1정도 수준밖에 이르지 않았다 (Quack, 1993, 46).

은퇴시기에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후 보장은 중요하고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서독에서 연금수준은 성별과 계층에 따라 차별적이었다. 1992년 평균남성의 연금은 1.754 DM이었고 여성의 평균연금은 715DM으로 차이가 컸다. 280만 여성들의 월 연금은 600DM 미만이었고 250만 여성들은 자주적으로 연금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었다. 이러한 법적 권리가 없는 여성들은 배우자에게 의존하였다. 그리고 배우자도 낮은 연금을 수령하는 여성이거나 한 부모 가족의 여성들은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90년대에 자녀출산 후 혹은 양육휴가 후 여성들은 대부분이 시간제 근로로 재취업하고 비지속적인 고용형태를 보였다. 그런데 연금의 수준은 개인 보험기여금의 지불기간과 보험료 수준에 의해 정해진다. 그래서 노동중단의 기간이 길고 시간제 근로를 통한 임금소득은 노후에 낮은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개 짧은 보험가입기간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노동중단과 일과 가족의 이중적인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일찍 노동을 중단할 때 발생한다. 또한 낮은 수준의 보험료는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동안 일어난다. 이런 맥락에서 1992년 연금 개혁법으로 최저 임금에 대한 새로운 연금산정방식은 비지속적인 시간제 근로를 하는 여성들의 낮은 연

www.kci.go.kr

금 수준을 조정하지 않음으로 노후의 소득보장이 위험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배우자 혹은 국가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정책 지원수준과 결과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70년대 이후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인 변화 국면에서 여성들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노동시장 참여를 원하였다. 특히 90년대 젊은 여성들 대부분은 자녀출산 후에 일을 중단하였다가 이어서 자녀가 더 이상 돌봄이 필요 없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이 되는 시간제 근로를 기반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기대하였다. 이처럼 많은 여성들이 가족 및 성별분업과 노동참여에 대한 문화적 가치관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생계부양자 전업주부모델)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Kohl정부, 특히 90년대에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70년대에 비해 뚜렷하게 비지속적인 노동형태의 특징을 드러내었다. 즉,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자녀출산 후 완전히 그리고 더 오래 동안 노동을 중단하고 이어서 시간제 근로를 기반으로 비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경력에서 그리고 사회보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였다. 이는 국가의 사회정책지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의 서독에서 한 메달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과 정규직 고용형태 개념이 여전히 국가의 여러 사회정책의 가치관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가는 양육휴가를 3년으로 연장을 하였다. 그리고 양육휴가 제도 내에서 일을 중단하고 아동 돌봄에 대해 낮은 수준의 재정적 지원으로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재정적 지원은 여성들이 배우자 혹은 국가에 의존 없이 자립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부모 중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의 양육휴가 사용은 기대할 수 없고, 소득이 낮은 여성들 대부분이 양육휴가 동안 그들의 소득 상실을 피하기 위해 양육휴가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낮은 재정지원 요소가 성별분업의 강화를 이끈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서독 복지국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70년대와 비교했을 때 거의 개선되지 않은 90년대의 보육시설의 반일제 중심과 공적보육시설 및 3세미만과 초등학생을 위한 보육 시설의 부족 등의 보육정책은 많은 여성의 노동중단을 유인하거나 혹은 뚜렷하게 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었다. 이러한 보육제도의 요소들이 여전히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의 어머니로 제한함으로써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유지·강화한다.

게다가 자녀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들의 비지속적인 노동형태와 시간제근로는 직업재교육프로그램과 연금정책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였다. 70년대에 비해 직업재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생활비에 대한 법적 권리의 자격 조건과 생활비의 수준은 90년대에 더 뚜렷하게 제한되고 감축되었다. 그래서 비지속적인 시간제 근로를 하는 여성들은 직업교육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이러한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은 70년대에 비해 1992년 연금법 개정의 새로운 연금산정방식을 통해 비지속적인 근로형태와 시간제근로로 인한 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그래서 비지속적인 시간제 근로로 일하는 여성들은 지속적인 종일제 정규

www.kci.go.kr

직근로를 하는 여성과 남성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연금을 획득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짧은 시간제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국가 연금 정책에서 자주적인 급여 청구권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자주적인 노후보장은 달성될 수 없었다. 이러한 연금정책의 특징은 정책 속에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개념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한 메달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과 정규직 고용형태 개념은 동일하게 90년대의 서독복지국가의 양육휴가정책, 보육정책, 직업재교육프로그램, 연금정책의 가치관으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강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90년대에 여성의 변화된 젠더 가치관과 서독 복지국가의 정책들이 일괄적으로 지향하는 전통적인 젠더가치관과의 불일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과 지원에 반영하지 못했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지원을 하였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더 오래 동안 노동중단을 하고 비지속적인 시간제근로 형태의 특징을 70년대에 비해 뚜렷하게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형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경력에서 그리고 사회보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비해 70년대에는 여성들과 국가 정책의 젠더 가치관이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로 일치하여서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특징을 보이지만 90년대와는 다른 정책 지원과 방법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와 삶의 질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90년대의 서독처럼 한국사회도 특히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최근까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다. 그래서 여성들의 노동참여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커지고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이 시점에서 서독의 90년대 정책지원의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여성들은 어떤 노동시장 참여 형태를 원하는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여성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며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구 국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성들이 자녀출산 후에도 지속적이고 사회보장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돌봄이 많이 필요한 어린자녀 양육기에는 근무시간 단축을 원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비지속적이고 사회보장이 되지 않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성장과 효율성만을 우선시 할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복지정책의 과거와 현재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경제적 자립과 평등한 노동참여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동일하게 성인 노동자 모델에 기반 해서 모든 남녀를 시민노동자로 인식하고 평등하게 보편적으로 충분하고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www.kci.go.kr

참고문헌(Korean References)

이미화. 2014. “한국 여성노동지원정책의 변화와 함의(1998-2007년):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제30집 4호, 571-605.

_____. 2015.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의 성격: 성인노동자 모델을 중심으로, 미간행.

이진숙. 2006. “독일 가족정책의 현황과 젠더적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제58집 4 호, 93-118.

이진숙. 2008. “독일의 일-가족 양립정책에 대한 연구: 보육지원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8집3호, 165-190.

임종헌·한형서. 2011. “메르켈 정부 수립 이후의 복지정책 변화와 방향 –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집 2호, 189-216.

정재훈·박은정. 2012. “가족정책 유형에 따른 독일 가족정책 변화 분석.” 『가족과 문화』 제24집 1호, 1-30.

한경헌·어윤덕. 2011. “대연정 시기의 독일 가족정책 변화와 정책 아이디어 역할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집 4호, 135-160.

www.kci.go.kr

참고문헌(English References)

Bäcker, G. and Brigitte Stolz-Willig. 1993. “Teilzeit: Probleme und Gestaltungschancen.” *WSI-Mitteilungen* Vol. 46 No. 9, 545-553.

Becker, A. 1999. “Gendering Welfare States oder: Elemente eines geschlechtersensiblen Sozialstaatsvergleichs.” In *Sozial berichterstattung und Sozialstaatsbeobachtung. Individuelle Wohlfahrt und wohlfahrtsstaatliche Institutionen im Spiegel empirischer Analysen*, edited by Flora, Peter und Heinz-Herbert Noll, 193-216. Frankfurt am Main/New York: Campus Verlag.

Dingeldey, I. 2002. “Das deutsche System der Ehegattenbestreuerung im europaeischen Vergleich.” *WSI-Mitteilungen* Vol. 55, No. 3, 154-161.

Dingeldey, I. and Silke Reuter. 2003a. “Arbeitsmarktintegration von Muettern als Ziel der Familienpolitik:Zunehmende Arbeitsmarktsegmentation in Frankreich und Grossbritannien.” *Femina Politica* Vol. 12, No. 1, 55-68.

Dingeldey, I. and Silke Reuter. 2003b. “Beschäftigungseffekte der neuen Verflechtung zwischen Familien und Arbeitsmarktpolitik.” *WSI-Mittelung-en* Vol. 56, No. 11, 659-666.

Engelbrech, G. 1987. “Erwerbsverhalten und Berufsverlauf von Frauen: Ergebnisse neuerer Untersuchungen im Überblick.”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Vol. 2, 181-196.

Engelbrech, G. 1997. “Erziehungsurlaub – und war dann? Die Situation von Frau-en bei ihrer Rückkehr auf den Arbeit smarkt – Ein Ost/West-Vergl-eich.” *IAB Kurzbericht* Vol. 8, 1-5.

Engelbrech, G., Gruber, H. and Maria Jungkunst. 1997. “Erwerbsorientierung und Erwerbstätigkeit ost-und westdeutscher Frauen unter veränderten gesellschaftli-chen rahmenbedingungen.” *MittAB*, Vol. 30, No. 1, 150-169.

Engelbrech, G. and Maria Jungkunst. 1998. “Erwerbsbeteiligung von Frauen und Kinderbetreuung in ost- und westdeutschen Familien.” *IAB Werkstattbericht*, Vol. 2, 2-18.

Engelbrech, G. and A. Reinberg. 1998. „ Erwerbsorientierung und Beschäftigung smöglichkeiten von Frauen in denneunziger Jahren: Wirtschaftliche Umstrukturierung und frauentypische Arbeitsmarktrisiken in Ost-und Westdeutschland.“ In *Beschäftigungsrisiko Erziehungsurlaub. Die- Bedeutung des "Erziehungsurlaubs" für die Entwicklung der Frauenerwerbstätig-keit*, edited by U. Rauter, 39-91.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Engelbrech, G. And A. Reinberg. 1997. “Frauen und Männer in der Beschäftigung skrise der 90er Jahre. Entwicklung der Erwerbstätigkeit in West und Ost nach Branchen, Berufen und Qualifikationen.” *IAB Werkstattbericht*, Vol. 11, 1-14.

Engstler, H. and Sonja Menning. 1997. *Die Familie im Spiegel der amtlichen Stati-*

www.kci.go.kr

stik: Lebensformen, Familienstrukturen, wirtschaftliche Situation der Familien und Familiendemographische Entwicklung in Deutschland. Bonn: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Geissler, B. and M. Öchsle. 1996. *Lebensp- l anung junger Frauen: zur widersprüchlichen Modernisierung weiblicher Leben släufe*. Weinheim: Deutscher Studien Verlag.

Gornick, J. C. and M. K. Meyers. 2003. "Supports for Working Families: Work and Care Policies Across Welfare States." *CESifo DICE Refort*, Vol. 4, 13-18.

Gottschall, K. and K. Hagemann. 2002. "Die Halbstagsschule in Deutschland: Ein Sondefall in Europa?"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Vol. 41, 12-22.

Gottschall, K. and K. Bird. 2003. "Family leave policies and labor market segregation in Germany - Reinvention or reform of the male breadwinner?" *Review of Policy Research – Special Issue on Gender and Work Place Policies*, Vol. 20, No. 1, 115-134.

Hinrichs, K. 1996, "Das Normalarbeitsverhältnis und der männliche Familienernährer als Leitbilder der Sozialpolitik. Sicherungsprobleme im sozialen-Wande." *Sozialer Fortschritt*, Vol 4, 102-107.

Holst, E. and J. Schupp. 1996. "Wandel der Erwerbsorientierung von Frauen – Zum Prozeß der Erwerbsbereitschaft und der Eingliederung in den Arbeits markt." In *Lebenslagen im Wandel: Sozialberichterstattung im Längsschnitt.* Edited by Zapf, Wolfgang, Schupp, Jür gen and Roland Habich, 162-192, Fr ankfurt am Ma-in/New York:Campus.

Holst, E. and F. Maier. 1998. "Normalarbeitsverhältnis und Geschlechterordnung."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Vol. 3, 506-518.

Koch, A. 2001. "Neubewertung der Familienarbeit in der Sozialpolitik?" *Feministische Studien*, Vol. 19, No. 1, 49-61.

Koch, A. and G. Bäcker. 2004. "Mini- und Mi di-Jobs – Frauenerwerbstaetigkeit und Niedrigeinkommensstrategien in der Arbeitsmarktpolitik". In *Hauptsache Arbeit: feministische Perspektiven auf den Wandel von Ar-beit*. edited by B. Dagmar, C. Rudolph and A. Satilmis, 85-103. Münster: Westfälisches Dampfboot.

Kohler, H., Rudolph, H. and E. Spitznagel. 1996. "Umfang, Struktur und Entwicklung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 Eine Bestandsaufnahme", *IAB Kurzbericht*, Vol. 2, 1-7.

Krüger, H. 2000. "In Partnerschaft gedacht? Zur Institutionenlogik der Kinderbetreuung in Deutschland." Überarbeitetes Vortragsmanuskript, gehalten auf der internationalen Tagung der Angestell- ten-Kammer Bremen, am 10. 5. 2000 zu: Von den Nachbarinnen lernen Vereinbarkeit von Familie und Beruf in Europa.

Landenberger, M. 1991. "Erziehungsurlaub:

www.kci.go.kr

Arbeitsmarktpolitisches Instrument zur selektiven ausgliederung und Wiedereingliederung von Frauen", In *Vom Regen in die Traufe: Frauen zwischen Beruf und Familie*, edited by Mayer, K. U., Mayer, J. Allmendinger and Huinink J., 262-287. Frankfurt: Campus.

Lewis, J. 2003. "Erwerbstaetigkeit versus Betreuungsarbeit". In *Erwerbstaetige Muetter: Ein europaeischer Vergleigh*, edited by Gerhard, Ute, Knijn, Trudie and A. Weckwert, Muenchen: C.H. Becks.

Lewis, J. 2004. "Auf dem Weg zur Zwei-Erwerbstaetigen-Familie." In *Wohlfahrtsstaat und Gschlechterverhaeltnis im Umbruch. Was kommt nach dem Ernaehrermodell?.* Edited by S. Leit- ner, I. Ostner and M. Schratzenstaller, 62-84. Wiesbaden: VS V-erlag fuer Soaislwissenschaften.

Lewis, J. and I. Ostner. 1994. "Gender and the Evolution of European Social Policies." *ZeS Arbeitspapier* No. 4, 1-63.

Ochs, C. and H. Seifert. 1994. "Frauenförderung durch Arbeitsmarktpolitik?", In *Kind, Beruf, soziale Sicherung*, edited by Ochs, C. and H. Seifert, 119-137. Köln: Bund.

Ochs, C. and H. Seifert. 1992. "Frauen und Arbeitsmarktpolitik." *Mit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Vol. 7, 439-448.

Pfau-Effinger, B. 1998. "Arbeitsmarkt- und Familiendynamik in Europa - Theoretische Grundlagen der vergleichenden Analyse." In *FrauenArbeitsMarkt. Der Beitrag der Frauenforschung zur sozioökonomischen Theorienentwicklung,* edidted by B. Geissler, F. Maier and B. Pfau-Effinger, 177-195. Berlin.

Pfau-Effinger, B. 1999. "Change of Familiy Policies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European Societies." *Comparative Social Research*, Vol. 18, 135-159.

Prinz, K. 1994. "Erwerbsverläufe und Alterssicherung von Frauen." In Kind, Beruf, soziale Sicherung, edited by G. Bäcker and B. Stolz-Willig, 236-265. Köln: Bund.

Ochs, C. 1997. "Mittendrin und trotzdem draußen -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Miteilungen aus d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Vol. 9. 640-650.

Orloff, A.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8, 303-328.

Orloff, A. S. 2002. *Women' Employment and Welfare Regimes: Globalization Export Orientation and Social Policy in Europe and North America*. Geneva: UNRISD.

Quack, S. 1992. *Dynamik der Teilzeitarbeit. Implikationen für die soziale Sicherheit.* Berlin: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ür Sozialforschung.

Schiersmann, C. 1995. "Bedingungen der Vereinbarkeit von Erwerbstätigkeit und

www.kci.go.kr

Familienarbeit im europäischen Vergleich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von Elternurlaubsregelungen." *Zeits-chrift für Frauenforschung*, Vol. 12, No. 1-2, 94-114.

Schneider, N. F and H. Rost. 1998. "Von Wandel keine Spur – warum ist Erziehungsurlaub weiblich?" In *Die ungleiche Gleichheit: Junge Frauen und der Wandel im Geschlechterverhältnis*, edited by M. Oechsle, and B. Geissler, 217-236. Opladen: Leske und Budrich.

Shire, K. and K. Gottschall. 2007. *Understanding Employment Systems from a Gender Perspektive–Pitfalls and Potentials of New Comparative Analytical Frameworks*. Bremen: Zentrum für Sozialpolitik, Universität Bremen.

Vaskovics, L. A. and H. Rost. 1999. Väter und Erziehungsurlaub.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Wilkens, I. 2005. "Weiterbildung/lebenslanges Lernen und soziale Segmentation." In Berichterstattung zur sozioökonomischen Entwicklung in Deutschland. Arbeit und Lebensweisen. Erster Bericht, edited by SOFI/IAB/ISF/INIFES, 503-520. Wiesbaden: VS Verlag.

www.kci.go.kr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Han, Kyung-hun and Deok-eo Yun. 2011. “A Study of the Germany Family Policy Change during Grand Coalition and The Role of Policy Ideas.” *Journal of the Korean-German Society for the Social Sciences* 21(4), 135-160.

Jung, Jae-hoon and Eun-jung Park. 2012.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Change in German Family Policy.” *Family and Culture* 24(1), 1-30.

Lee, Jin-sook. 2006. “German Family Policy in gender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4), 93-118.

Lee, Jin-sook. 2008. “A Study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in Germany – Focused on Child Care.” *Journal of the Korean-German Society for the Social Sciences* 18(3), 165-190.

Lee, Mi-hwa. 2014. “Reform and Implication of the Social Policies for Women’s Labour Support from 1998 to 2007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Male-Breadwinner Model.”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Kyungsung University) 30(4), 571-605.

Lee, Mi-hwa. 2015. “The Character of Job creation Program in Social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Adult Worker Model.” Unpublished.

Lim, Jong-hun and Hyung-seo Han. 2011. “Eine Studie über die Familien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Journal of the Korean-German Society for the Social Sciences* 21(2), 189-216.

www.kci.go.kr